
송정복합체육센터 운영물품 구매 과업요청서

2024. 5.

가. 과업개요

- 1) 사업명: 송정복합체육센터 운영물품 구매
- 2) 사업목적
 - 송정복합체육센터 안정적 개관 및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
- 3) 도입일정
 - 납품기간: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
 - 검 수: 최종납품 후 7일 이내
 - 납품완료: 검수 완료일

나. 사 양

- 입찰시 첨부한 물품내역의 제품으로 한다.
 - * 내역서의 규격에 대한 임의해석을 금지하며,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 「군포도시공사 체육관리부 송정체육센터팀 업무담당자」(이하 담당자)가 지정하는 제품으로 한다.

다. 납품조건 및 유지보수

1) 품질 및 하자보수

- 납품물품은 송정복합체육센터 운영물품 기준에 적합한 최신, 최상의 규격품으로 해야 한다.
- 일반적인 무상보증 기간 및 내용연수 기간 중, 유·무상 수리가 가능한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, 담당자가 요구할 경우 유·무상으로 지체없이 공급하여야 한다.
- 모든 제품은 친환경제품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납품 전에 담당자와 협의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.
-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, 사용과정에서 불량제품 발견 시 즉시 교체해 주어야 한다.
 - * 단,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제품 파손은 제외

2) 납품

- 물품을 납품함에 있어 담당자가 요구한 규격과 상이할 경우 납품을 거절할 수 있고, 납품업체는 이에 대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, 손해배상 청구 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
- 규격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하여야 하며, 납품하는 물품은 물품 목록 사항과 동일한 것으로 가장 최근 년도의 제작된 것으로 납품한다.
- 납품 시 포장 단위, 포장 방법 등 및 납품 장소는 담당자의 요구에 따른다.
- 정확하고 신속한 납품 및 검수를 위해 담당자와 사전에 납품 일시와 장소를 협의한다. (택배 등 제3자 납품 불가)
- 납품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위탁하거나 하도급 할 수 없다.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모든 책임은 계약 상대방이 진다.

3) 검수

- 모든 제품은 납품 전 발주자가 정하는 장소에서 검수를 거쳐야 하며 검수 시 제품에 대한 안내, 설명, 자료제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- 물품은 원래 포장상태로 납품하여야 하며, 감독자의 확인 전에 임의로 개봉하거나 개봉 흔적이 있는 경우 정식제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.
- 검수 결과 하자발생 또는 기 제시된 공고사양서와 상이하거나 혹은 동등한 기종 이상이 아닐 경우 모든 제품은 발주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재납품 및 재검수를 받아야 한다. 발주자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재납품이 되지 않을 경우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0조(지연배상금 등)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.

4) 계약의 해지 및 변경

-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발주자는 시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,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- 과업요청서의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
 - 지정된 기한 및 장소에 물품 납품을 하지 못하는 경우
 - 납품지연, 품질미달, 규격 이상 등의 하자로 인해 객관적으로

납품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

-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양도, 전매, 전대,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
- 기타 과업요청서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

라. 대금지급: 군포도시공사 회계 규정에 따른다.

마. 기타사항

- 1) 본 과업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군포도시공사 및 공급자 쌍방의 해석에 따라 상호 차이가 있을 경우 쌍방의 협의에 따라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안 될 시는 시의 결정에 의한다.
- 2) 제출 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허위, 과장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는 모든 자격을 상실한다.
- 3) 본 물품 구입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포시 소재지역의 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.
- 4) 담당자의 요청 시 특별 사유가 없는 한 도입 물품에 대한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